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

목 적

-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

근거규정

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

적용대상

-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**당연퇴직, 파면 · 해임**된 공직자
- 퇴직한 이후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**

※ 공직자 :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(공직자윤리법)의 임 · 직원

대상기관 및 제재조치

- 비위면직자등은 **공공기관, 부패행위 관련 기관** 및 퇴직 전 **5년간**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**밀접한 관련**이 있는 **영리사기업체, 법무 · 회계 · 세무법인** 등에 **퇴직일부터 5년간** 취업이 제한됨

※ 공공기관,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규모나 업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됨

※ 밀접한 업무 관련성 판단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판단



- 취업제한규정 위반시 **해임요구** 및 **고발요구** 실시

※ 위반자 벌칙조항(법 제89조)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